

서울특별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3202
----------	------

제출년월일 : 2022년 5월 25일

제 출 자 : 서울특별시장

1. 제안이유

한시기구 존속기한 만료 예정에 따른 정원 감축, 「공직선거법」 개정으로 서울시의회 의원 정수가 확대됨에 따라 법정 인력 증원, 서울대공원 전문경력관 충원을 위한 정원 조정 등 서울시 총 정원을 19,138명에서 19,139명으로 1명 증원하려는 것임.

2. 주요내용

가. 한시기구인 문화시설추진단 폐지에 따른 정원 감축(3급 △1)

- 본청 3급 △1명

※ 존속기한 : '21. 8. 19. ~ '22. 8. 18.(1년) / 최초설치 : '16. 8. 19.

나. 「공직선거법」 개정('22. 4. 20.)에 따른 법정 인력 증원(4급 +1, 6급 +1)

- 「공직선거법」 개정으로 서울시의회 의원 정수가 확대(110명 → 112명)

되어, 관련 법령에 따라 의회사무처 정원 증원

▶ (4급 +1) 위원회에 두는 전문위원 증원

▶ (6급 +1) 정책지원 전문인력 증원

<관련 법령>

◆ 「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 [별표 5] 4급 전문위원 정수

▶ 지방의원의 정수 110명 이하 : **11명** → 지방의원의 정수 120명 이하 : **12명 (+1)**

◆ 「지방자치법」 부칙 제6조

▶ 지방의회에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두는 경우 그 규모는 2022년 12월 31일까지는 지방의회 의원 정수의 4분의 1 범위에서 도입

※ (서울) 시의원 110명의 1/4 : **27명** → 112명의 1/4 : **28명 (+1)**

다. 서울대공원 사육운영직 등 퇴직에 따른 인력 충원을 위해 전문경력관
으로 정원조정

- 일반직 5급 이하 △6 → 전문경력관 +6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- (1) 「지방자치법」 제41조(의원의 정책지원 전문인력) 및 부칙 제6조(정책
지원 전문인력 도입규모에 관한 특례), 제125조(행정기구와 공무원),
- (2) 「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 제8조(한시
기구의 설치운영), 제28조(한시정원), 제30조(정원의 규정), 별표 5(위
원회에 두는 전문위원의 직급 및 정수기준)

나. 예산조치: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참조

다. 기 타

- (1) 신·구조문대비표: 별도 첨부
- (2) 입법예고('22. 5. 9. ~ 5. 13.) 결과: 의견없음
- (3)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: 별도 첨부

서울특별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19,138명”을 “19,139명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호 중 “10,563명”을 “10,562명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4호 중 “393명”을 “395명”으로 한다.

별표 4의 표 중 총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총 계	11,702	
-----	--------	--

같은 표 일반직 계란, 3급란, 4급란, 5급 이하 소계란, 전문경력관 소계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.

일반직 계	10,691	
-------	--------	--

3급	17	8		1	8	
----	----	---	--	---	---	--

4급	255	155	19	8	66	7
----	-----	-----	----	---	----	---

5급 이하 소계	10,244	
----------	--------	--

전문경력관 소계	129	
----------	-----	--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단, 본청 3급 1명 감축 사항은 2022년 8월 19일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<p>제2조(정원의 총수) 서울특별시에 두는 공무원(이하 “공무원”이라 한다) 정원의 총수는 <u>19,138명</u>으로 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.</p> <p>1. 집행기관의 정원(제2호부터 제6호에 따른 공무원의 정원을 제외한다): <u>10,563명</u></p> <p>2. ~ 3. (생략)</p> <p>4.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: <u>393명</u></p> <p>5. ~ 6. (생략)</p> <p>[별표 4] 소방공무원과 경찰공무원을 제외한 공무원의 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(제4조제1항 관련)</p>	<p>제2조(정원의 총수) ----- ----- ----- <u>19,139명</u> ----- -----.</p> <p>1. ----- ----- -----: <u>10,562명</u></p> <p>2. ~ 3. (현행과 같음)</p> <p>4. -----: <u>395명</u></p> <p>5. ~ 6. (현행과 같음)</p> <p>[별표 4] ----- ----- -----</p>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 font-size: small;"> <thead> <tr> <th>구분</th> <th>계</th> <th>본청</th> <th>의회사무처</th> <th>직속기관</th> <th>사업소</th> <th>합의제행정기관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총계</td> <td>11,701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정무직계</td> <td>4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시장</td> <td>1</td> <td>1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부시장</td> <td>1</td> <td>1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서울특별시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</td> <td>1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1</td> </tr> <tr> <td>서울특별시 자치경찰위원회 상임위원</td> <td>1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1</td> </tr> <tr> <td>일반직계</td> <td>10,690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1급</td> <td>7</td> <td>6</td> <td>1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2·3급</td> <td>24</td> <td>19</td> <td></td> <td>1</td> <td>3</td> <td>1</td> </tr> <tr> <td>3급</td> <td>18</td> <td>9</td> <td></td> <td>1</td> <td>8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3·4급</td> <td>5</td> <td>5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4급</td> <td>254</td> <td>155</td> <td>18</td> <td>8</td> <td>66</td> <td>7</td> </tr> <tr> <td>4·5급</td> <td>10</td> <td>10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5급 이하 소계</td> <td>10,249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전문경력관 소계</td> <td>123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별정직계</td> <td>37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4급상당</td> <td>5</td> <td>3</td> <td>2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5급상당 이하 소계</td> <td>32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연구직계</td> <td>405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연구관</td> <td>62</td> <td>4</td> <td></td> <td>34</td> <td>24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연구사</td> <td>343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지도직계</td> <td>24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지도관</td> <td>2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2</td> <td></td> <td>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구분	계	본청	의회사무처	직속기관	사업소	합의제행정기관	총계	11,701						정무직계	4						시장	1	1					부시장	1	1					서울특별시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	1					1	서울특별시 자치경찰위원회 상임위원	1					1	일반직계	10,690						1급	7	6	1				2·3급	24	19		1	3	1	3급	18	9		1	8		3·4급	5	5					4급	254	155	18	8	66	7	4·5급	10	10					5급 이하 소계	10,249						전문경력관 소계	123						별정직계	37						4급상당	5	3	2				5급상당 이하 소계	32						연구직계	405						연구관	62	4		34	24		연구사	343						지도직계	24						지도관	2			2			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 font-size: small;"> <thead> <tr> <th>구분</th> <th>계</th> <th>본청</th> <th>의회사무처</th> <th>직속기관</th> <th>사업소</th> <th>합의제행정기관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총계</td> <td>11,702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정무직계</td> <td>4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시장</td> <td>1</td> <td>1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부시장</td> <td>1</td> <td>1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서울특별시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</td> <td>1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1</td> </tr> <tr> <td>서울특별시 자치경찰위원회 상임위원</td> <td>1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1</td> </tr> <tr> <td>일반직계</td> <td>10,691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1급</td> <td>7</td> <td>6</td> <td>1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2·3급</td> <td>24</td> <td>19</td> <td></td> <td>1</td> <td>3</td> <td>1</td> </tr> <tr> <td>3급</td> <td>17</td> <td>8</td> <td></td> <td>1</td> <td>8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3·4급</td> <td>5</td> <td>5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4급</td> <td>255</td> <td>155</td> <td>19</td> <td>8</td> <td>66</td> <td>7</td> </tr> <tr> <td>4·5급</td> <td>10</td> <td>10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5급 이하 소계</td> <td>10,244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전문경력관 소계</td> <td>129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별정직계</td> <td>37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4급상당</td> <td>5</td> <td>3</td> <td>2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5급상당 이하 소계</td> <td>32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연구직계</td> <td>405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연구관</td> <td>62</td> <td>4</td> <td></td> <td>34</td> <td>24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연구사</td> <td>343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지도직계</td> <td>24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지도관</td> <td>2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2</td> <td></td> <td>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구분	계	본청	의회사무처	직속기관	사업소	합의제행정기관	총계	11,702						정무직계	4						시장	1	1					부시장	1	1					서울특별시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	1					1	서울특별시 자치경찰위원회 상임위원	1					1	일반직계	10,691						1급	7	6	1				2·3급	24	19		1	3	1	3급	17	8		1	8		3·4급	5	5					4급	255	155	19	8	66	7	4·5급	10	10					5급 이하 소계	10,244						전문경력관 소계	129						별정직계	37						4급상당	5	3	2				5급상당 이하 소계	32						연구직계	405						연구관	62	4		34	24		연구사	343						지도직계	24						지도관	2			2		
구분	계	본청	의회사무처	직속기관	사업소	합의제행정기관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총계	11,701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정무직계	4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시장	1	1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부시장	1	1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서울특별시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	1					1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서울특별시 자치경찰위원회 상임위원	1					1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일반직계	10,690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1급	7	6	1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2·3급	24	19		1	3	1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3급	18	9		1	8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3·4급	5	5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4급	254	155	18	8	66	7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4·5급	10	10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5급 이하 소계	10,249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전문경력관 소계	123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별정직계	37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4급상당	5	3	2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5급상당 이하 소계	32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연구직계	405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연구관	62	4		34	24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연구사	343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지도직계	24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지도관	2			2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구분	계	본청	의회사무처	직속기관	사업소	합의제행정기관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총계	11,702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정무직계	4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시장	1	1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부시장	1	1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서울특별시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	1					1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서울특별시 자치경찰위원회 상임위원	1					1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일반직계	10,691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1급	7	6	1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2·3급	24	19		1	3	1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3급	17	8		1	8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3·4급	5	5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4급	255	155	19	8	66	7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4·5급	10	10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5급 이하 소계	10,244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전문경력관 소계	129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별정직계	37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4급상당	5	3	2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5급상당 이하 소계	32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연구직계	405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연구관	62	4		34	24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연구사	343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지도직계	24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지도관	2			2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
현 행							개 정 안						
구 분	계	본 청	의회 사무처	직속 기관	사업소	합 의 제 행정기관	구 분	계	본 청	의회 사무처	직속 기관	사업소	합 의 제 행정기관
지도사	22						지도사	22					
교육공무원 계	541						교육공무원 계	541					
총 장	1			1			총 장	1			1		
교수 등	465			465			교수 등	465			465		
조 교	75						조 교	75					

서울특별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비용발생 요인

해당없음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「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1항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
1. "비용추계서"라 함은 서울특별시의회 의원(이하 "의원"이라 한다)·서울특별시의회 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·서울특별시시장(이하 "시장"이라 한다)·서울특별시 교육감(이하 "교육감"이라 한다)이 발의·제안 또는 제출되는 의안이 시행될 경우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**재정지출의 순증가액 또는 재정수입의 순감소액(이하 "비용"이라 한다)에 관하여 추계**(이하 "비용추계"라 한다)한 자료를 말한다.

제3조(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) ① 의원·위원회·시장·교육감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·제안 또는 제출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. 다만,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1. **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억원 미만이거나**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0억원 미만인 경우
-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

3. 미첨부 사유

총 정원 1명 증원에 따른 예상비용은 연평균 5억원 미만이므로, 「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비용추계서 첨부 대상이 아님

4. 작성자

서울특별시 조직담당관 유진 (☎ 2133-6729)